

韓國 仲裁制度的 現況과 仲裁人의 地位

The Present Conditions of Korea Arbitration, Arbitrator Position

梁 柄 嘯*

Yang, Byung-Hoe

目 次

- I. 紛爭解決의 多樣化
- II. 仲裁와 仲裁合意
- III. 仲裁人의 選定과 教育
- IV. 맺으면서

국문초록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분쟁은 법원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해 해결한다. 그러나 복잡·다양한 모든 사건을 법원에 의해서만 해결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대국가에서는 소송외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제도(ADR)를 적극 연구·검토하여 오고 있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소송과 마찬가지로 분쟁당사자에게 제3자의 면전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나 소송은 법원이 당해사건만을 대상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데 비하여 ADR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데에 소송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이다. 중재의 본질은 그것이 사적재판이라는 데 있으며 그 점에서 당사자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화해나 조정과 다르다. 이하에서는 한국중재법의 현황과 중재인의 선정과 교육에 대해 살펴보

논문접수일 : 2010. 3. 30.

심사완료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4.

* 建國大 法科大學 名譽教授

고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주제어 : ADR, 중재제도, 중재인, 분쟁해결

I. 紛爭解決의 多樣化

日常 法律關係에서 발생한 분쟁을 가능하면 友好的이면서 終局的으로 解決하여 共同體의 社會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方案으로 各國에서는 公的인 民事訴訟制度에 의한 方法과 紛爭當事者의 自律的인 의사에 의한 自主的 解決方式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 일반적으로 私法上的의 紛爭은 法院에 의한 訴訟節次에 의해 해결한다. 그러나 複雜多樣的한 모든 사건을 法院에 의해서만 解決함에는 限界가 있으므로 現代國家에서는 訴訟外的 方法에 의한 紛爭解決制度(Alternative Dispute Resoultion, ADR)를 적극 研究 檢討하여 왔다.¹⁾

미국을 비롯한 독일²⁾, 일본³⁾ 등 많은 國家와 UNCITRAL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그 制度的 필요성과 特徵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綜合的인 法理檢討와 節次상의 問題點을 學界와 實務界를 中心으로 많은 論議를 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年代 중반 부터 미국 司法制度의 전반적인 再檢討가 試圖되면서 法院에서의 訴訟節次 外에 協商과 自律的인 분쟁해결 節次를 訴訟節次에 대한 補完的 機能을 가지는 紛爭解決 手段으로 檢討하였다.

미국에 있어서의 ADR은 調停, 仲裁, 調停-仲裁, Mini-Trial⁴⁾, Multidoor Courthouse⁵⁾ 등 그 실시방법도 다양하고 法院의 附屬形(court-annexed) 뿐만 아니라 營利, 非營利, 私的 및 公的機關에 의한 多樣的한 형태의 ADR制度가 급격히 擴大 實施되었다. 이와

1) 宋相現, "訴訟에 갈음하는 紛爭解決方案의 理念과 展望", 民事判例研究 XIV, 서울: 博英社, 1993, 417-418面.

2) Blankenburg, E./Gottwald, W./Stempel, D., Alternativen in der Ziviljustiz. Köln: Bundesanzeiger Verlag 1982.

3) Kojima, Takeshi, Civil Procedure and ADR in Japan. Tokyo: Cho Univ.Press 2004.

4) Wilkinson, John, Resolving disputes by using the Minitrial. N.Y.L.J.Aug. 27, 1987 at 5.

5) 權純一, "美國의 멀티도어 코드하우스(Multidoor Courthouse)제도에 관한 고찰-콜럼비아특별구 법원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裁判資料(제58집), 1994, 12.

함께 法院의 過重한 業務負擔이나 訴訟에 있어서의 費用의 負擔이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어 이에 따른 費用 및 訴訟遲延의 短縮(Expense and Delay Reduction)에 대한 論議가 比重 있게 다루어졌다.

그런데 1980年代가 되어 裁判外 紛爭解決方法의 有用性和 合法性이 社會的인 認識의 增加와 訴訟事件의 急增으로 法院의 過重한 負擔의 輕減이 國家的인 課題로 등장하면서 원래 ADR의 概念이 訴訟節次의 ADR로 編入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었다. 聯邦法院은 民事訴訟節次에 대해서도 1983年 改正한 聯邦民訴規則(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第16條⁶⁾를 受訴法院事件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ADR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論議의 中心은 무엇보다 社會 環境의 變化和 급격히 增大되는 國際貿易去來, 建設, 製造物責任 등 專門的이고 技術的인 分野의 모든 분쟁을 訴訟節次에 의해서만 해결하기에는 限界가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그리하여 傳統的 司法制度에 의한 紛爭解決의 限界性으로 인하여 裁判外 紛爭解決方法에 관한 法理構成의 必要性和 ADR制度의 活性化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ADR에서도 분쟁 당사자에게 第三者의 面前에서 主張과 證據를 提示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傳統的인 民事訴訟과의 類似性을 가진다. 그러나 訴訟에서는 法律家인 法官이 該當 事件만을 대상으로 法律的인 判斷을 하는데 비하여 ADR에서는 각 分野의 專門家가 長期的인 觀點에서 당사자의 利益을 中心으로 判斷하는 점에 本質的인 差異가 있다. 또 民事訴訟에서는 強制的인 節次가 適用되지만 ADR은 當事者가 合意한 內容에 따라 節次가 進行된다. 訴訟은 원칙으로서 兩者 擇一的인 解決을 하지만, ADR에서는 和解의 要素를 포함한 彈力的인 解決을 한다. 특히 當事者 雙方間에 友誼的(amicability)이고 未來 指向的인 內容의 解決 方法이 提示되는 등 訴訟과 對照를 보이고 있다.

ADR는 訴訟節次와는 獨立되게 실시되는 ADR (free-standing ADR)과 이와 區別해 法院에 부속된 ADR(court-annexed ADR)로 불리는데 法院에 부속된 ADR은 법원에 訴訟事件으로서 계속 한 사건을 法律의 規定 또는 法院의 命令에 의해 ADR節次에 回

6) Kane, Mary K., Civil Procedure in a Nutshell (West, 3rd.ed. 1991), §§3-35 and 36.

附되어서 仲裁나 調停과는 달리 ADR이 訴訟節次의 一部를 構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法院 附屬形 ADR의 종류는 극히 限定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法院 附屬形 ADR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訴訟上의 和解, 和解勸告 決定制度, 提訴前의 和解, 民事調停(특히 受訴法院의 職權에 의한 調停回附), 家事調停(家事訴訟法 第50條의 調停前置主義)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法院에 附屬한 ADR은 和解와 調停에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ADR手段으로서 和解=調停이라고 하는 形態만이 있다고 하겠다.

1980年代 以後 行政府 傘下의 各種 調停委員會에 의한 調停機構가 많이 設置되었는데,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消費者基本法第69條以下), 建設業紛爭調停委員會(建設產業基本法第69條以下), 環境紛爭調停委員會(環境紛爭調停法第4條), 金融紛爭調停委員會(金融委員會의設置등에 관한法律第51條), 著作權委員會(著作權法第112條), 下都給紛爭調停協議會(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法律第24條) 등이 있다. 대부분 委員會의 調停은 調停과 仲裁가 結合한 形態(med-arb)를 갖고 있어 調停이 成立하면 裁判上 和解와 同一한 效力(消費者基本法 第67條3項, 環境紛爭調停法 第33條, 金融委法 第55條, 著作權法 第117條)을 갖는다.

II. 仲裁와 仲裁合意

1. 仲裁(Arbitration)라 함은 當事者에 의해 選定된 仲裁人의 仲裁判定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紛爭을 最終的으로 解決을 하는 自主的 紛爭解決制度이다. 仲裁의 本質은 그것이 私的裁判(private judging)이라는 데에 있으며, 그 점에서 當事者의 相互 讓步에 의하여 自主的으로 해결하는 화해나 조정과 다르다. 仲裁은 어디까지나 當事者自治의 原則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當事者의 仲裁合意가 전제된다.

仲裁制度는 單審制이기 때문에 法院의 裁判에 비하여 분쟁이 迅速히 解決되고 費用이 低廉하다는 利點이 있다. 뿐만 아니라 關係분야의 전문가를 仲裁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을 할 수 있고, 非公開 審理이기 때문에 業務上 秘密의 維持에 좋고, 특히 國際商事去來上의 紛爭에 있어서는 분쟁해결에 가장 適合한 制度라고 할 수 있다.

仲裁節次의 開始를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仲裁合意가 必要하다. 仲裁合意는 契約締結時나 紛爭發生以前의 段階에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仲裁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合意(통상적으로 書面合意)를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契約書에 仲裁合意를 契約條項으로 插入하는데 大韓商事仲裁院(KCAB)에서는 다음과 같은 標準仲裁條項을 契約條件 등에 插入하는 方法을 권장하고 있다. 즉 國內去來의 경우 “이 契約으로부터 發生되는 모든 紛爭은 大韓商事仲裁院의 仲裁에 의해 最終적으로 解決한다”라는 條項을 契約時 插入함으로써 迅速하게 仲裁節次를 開始할 수 있게 하고 있다.

仲裁을 위한 仲裁合意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第三者를 통한 “斡旋制度”를 이용할 수 있다. 斡旋制度란 商去來에서 發生하는 분쟁을 분쟁해결의 經驗과 知識이 풍부한 第三者가 介入하여 兩當事者의 意見을 듣고 圓滿한 解決을 위한 助言과 妥協勸誘를 통하여 合意를 誘導하는 制度이다. 斡旋段階에서는 특히 분쟁 당사자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당사자간의 秘密이 保障되고 去來關係를 持續시킬 수 있는 長點이 있으며, 大韓商事仲裁院에서는 無料로 斡旋을 遂行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斡旋의 效力은 兩當事者의 自發的인 合意를 통한 解決이기 때문에 法的 拘束力은 없다.

이처럼 仲裁合意는 분쟁을 訴訟節次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仲裁에 의하여 해결하는 當事者들의 契約이다⁷⁾. 그러나 仲裁合意의 어느 당사자가 仲裁合意의 存在 또는 有效性에 異意를 제기하여 仲裁에 의한 紛爭解決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訴訟를 提起하게 되는바, 이 때 相對方 역시 仲裁에 의한 紛爭解決을 拋棄하고 訴訟節次에 따르거나, 아니면 仲裁合意가 있다는 理由로 訴訟節次의 進行을 妨害할 것이다. 이처럼 仲裁合意가 訴訟行爲를 妨害하는 效力을 直訴禁止의 效力이라 한다. 우리 仲裁法(仲裁法第9條)을 비롯한 外國의 立法例들은 法院으로 하여금 이러한 直訴禁止의 效力을 認定하여 분쟁을 優先적으로 仲裁節次에 의해 解決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仲裁節次에 法院의 關與

仲裁은 調停이나 和解 등과 달리, 有效한 當事者間的 仲裁合意가 있는 경우에 當事者自治의 原則을 尊重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紛爭을 終局的으로 解決하여야 하는

7) 睦榮垸, 商事仲裁法論(重版), 서울:博英社 2001, 56面이하.

제도이다. 그러므로 紛爭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하고 仲裁制度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仲裁節次의 開始 및 進行 그리고 仲裁判定(Awards)의 實現過程에 있어 法院의 關與를 최대한 自制하되, 一方 當事者가 이에 協助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의 申請에 따라 法院이 이에 效率的으로 關與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當事者一方이 仲裁合意를 무시하고 法院에 提訴한 경우에는 相對方 당사자가 仲裁合意存在에 대한 抗辯(妨訴抗辯)을 法院에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항변하지 않는 한 法院이 職權으로 調查하지 않는다. 이러한 被告의 抗辯은 本案에 관한 最初의 辯論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仲裁判定은 분쟁당사자에게는 法院의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仲裁法 第35條)이 있어 法院에 抗訴나 上告를 할 수 없다. 따라서 仲裁判定이 나면 當事者들은 이에 拘束되고 스스로 仲裁判定內容을 履行하여야 한다. 그러나 仲裁判定은 그 자체로서는 執行力이 없으므로 強制執行을 하기 위해서는 別途로 法院에 執行判決을 請求하여야 한다.

韓國은 國際的으로는 1958年の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UN協約”(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協約이라 略.)에 1973年 加入하였다⁸⁾. 이 協約에 加入할 때 우리나라는 韓國法上 商事關聯 紛爭에 限하고, 相互 締約國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協約을 適用한다는 留保宣言을 하였다.

3. 韓國의 仲裁法

a) 우리나라는 1960年 韓國民事訴訟法을 制定하면서 특별한 검토 없이 旧法에서 依用되었던 仲裁에 관한 규정을 旧獨逸民事訴訟法 仲裁編(舊日本民事訴訟法 第8編)을 完全削除하고 立法하였다.

그후 國際去來와 1962年 施行된 經濟發展 5個年計劃으로 對外貿易量이 增加하고 이에 따라 發生하는 紛爭의 迅速한 解決의 必要에서 單行法으로 1966年 仲裁法(法律 第1767号, 1966.3.16) 및 商事仲裁規則이 制定되면서 仲裁制度가 본격적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1980年代 들어서면서 對外 交易量의 急増과 國際去來로 인한 多樣한 形態의 紛爭이

8) 2009年2月 現在 144個國 加入하였다.

發生하게 되어 이에 대한 분쟁해결수단으로 仲裁制度的 擴大實施와 國際的 環境에 適用할 수 있는 仲裁法 改正의 必要性을 確認하게 되었다.

仲裁의 國際化에 따른 制度改善의 必要性和 國際仲裁에 있어서의 많은 問題가 指摘되어 검토하여 오던 차에 法務部와 仲裁學會를 중심한 仲裁法改正研究會에서 UNCITRAL의 1985年 모델仲裁法(Model law)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여, 改正된 新仲裁法은 1999年 12月2일에 國회를 통과하고 12月31日(法律 第6083号) 公布되어 같은 날로부터 施行되고 있다⁹⁾.

仲裁法에 根據하여 設置된 唯一한 常設仲裁機關으로 社團法人 大韓商事仲裁院(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ACB)이 있으며(仲裁法 第40條), 法曹, 學界 등 各계의 전문가 약 1156名을 仲裁인(2010.1.27現在, 外國居住仲裁人 92名 包含)을 委屬하고 있다¹⁰⁾.

b) 大韓商事仲裁院의 仲裁運用現況을 보면 2008年 仲裁 및 斡旋 總接受件數 1047件(國內 743件: 國際304件) 그중 仲裁事件은 262件(國內 215件: 國際 47件) 으로 2007年 도 仲裁事件 233件(國內 174件: 國際 59件)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2006년도 國家別 클레임 現況을 보면 주요 交易國인 美國, 中國, 日本의 클레임 比重은 전체클레임중 約 24%(前年 26%)를 차지하나, 印度와 U.A.E는 日本보다 交易量에 비해 많은 클레임이 發生하고 있는 현실이다.

紛爭은 가능한 迅速하고 簡易한 節次에 의해 解決하는 것이 그 最上의 目的이라 할 수 있다. 仲裁制度가 民事訴訟節次에 비하여 國際去來關係에서 發生한 분쟁해결에 適合하다는 것은 適正과 公正性을 理想으로 하는 訴訟보다는 專門性和 迅速性에 있는 것이다. 당사자가 어느 나라에서 訴訟에 의한 判決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內國的 規範에 의한 公權的 解決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서 權利를 實現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商事仲裁 外에 勞動仲裁는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停法 第62條에 기하여 行政府 傘

9) 張文哲, 現代證據법의 理解, 서울:世昌出版社 2000, 17面.

10) 仲裁人 現況: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5_01_02.jsp?sNum=4&dNum=0&pageNum=1&subNum=5 參照.

11) 仲裁(季刊), KACB 2009年, 第327号, 37面.

下 勞動委員會가 擔當하며, 言論仲裁은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に 관한 法律(2009.8.7 施行)第7條에 基하여 言論仲裁委員會가 擔當한다. 이외에도 스포츠分野의 분쟁해결을 위한 仲裁機關으로 韓國스포츠仲裁規定에 따라 '韓國스포츠仲裁委員會(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KSAC)'가 2006年 設置되어 運營된바 있다.

c) 民事仲裁의 檢討

韓國에서의 仲裁制度는 仲裁合意를 前提로 한 商事仲裁만을 현재 運營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民事事件은 法院에 集中되고 法院이 提供하고 있는 ADR, 즉 和解나 調停으로는 法院業務의 輕減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判斷하여 새로운 형태의 民事ADR 方案을 검토하고 있다. 그 하나가 서울地方辯護士會가 시작한 民事仲裁서비스이다. 이는 서울辯協이 1996年10月 試圖하였으나 실패하였던 기구를 2006年12月부터 다시 '仲裁센터'를 開所하여 仲裁業務를 수행해 오고 있다. 仲裁對象의 範圍는 2,000萬圓 以下の 民事少額事件으로 制限하였으며 仲裁申請費用은 無料지만 仲裁가 成立한 경우에는 解決金額의 5%를 成立手數料로 받는다. 지금까지의 利用實績은 未洽한 편이다.

III. 仲裁人の 選定과 教育

仲裁節次에서 仲裁人(Arbitrator)을 당사자가 選定하기 때문에 仲裁人이 흔히 中立性(neutral)을 잃고 當事者의 利益代辯人의 구실을 할 수 있으며, 法律知識을 갖춘 자가 選定된다는 保障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議長仲裁人(presiding officer)은 法曹人이나 法律家로 選定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

仲裁나 調停節次 등 傳統的인 분쟁해결 방법에서는 法律家가 紛爭解決節次에 대해 主要한 役割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貿易, 建設과 같은 專門的 分野의 紛爭에서는 法律的인 考慮 외에 經濟的 또는 技術的인 考慮가 必要하다.

專門家들에 의한 說明이나 對話는 紛爭의 決裂을 避할 수 있고 그 結果 和解의 成功率은 極히 높다고 본다. 또 만일 和解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도 企業의 專門家의 분쟁해결 과정의 介入은 계속적인 企業 關係의 將來에 있어 전혀 無意味하지는 않을 것이다.

1. 仲裁人의 選定과 義務

當事者自治의 原則에 따라 仲裁人의 選定은 당사자간의 合意로 정한다. 다만 위 合意가 있더라도 ① 一方 當事者가 合意된 節次에 따라 仲裁人을 選定하지 아니하는 때 ② 兩當事者 또는 仲裁人들이 合意된 節次에 따라 仲裁人을 選定하지 못할 때 ③ 仲裁人의 選定을 委任받은 機關 其他 第3者가 仲裁人을 선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던 當事者의 申請에 따라 法院이 仲裁人을 選定한다. 仲裁人 選定에 관한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抗告할 수 없다.²⁰⁾ 仲裁節次의 迅速성을 위한 것이다.

또한 大韓商事仲裁院에서 仲裁를 할 경우 一方 當事者가 約定된 期間 또는 商事仲裁規則(第20條)에서 정한 期間內에 仲裁人을 選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務局이 仲裁人을 選任한다.

仲裁判定을 함에 있어서 ①公正, 適正義務 ② 誠實義務 ③ 秘密遵守義務를 違反한 경우에는 當事者에 의해 忌避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仲裁人에 의해 내려진 仲裁判定이 取消되거나 執行이 拒否될 수 있다.

仲裁人은 仲裁判定을 내려 準司法的 機能을 遂行하고 있으므로, 만일 仲裁人이 義務를 違反한 경우 債務不履行에 따른 一定한 責任을 지도록 하며, 이는 公正性 및 適正성을 擔保하기 위함이다. 仲裁의 信賴性 保障은 당사자뿐 아니라 仲裁人에 대해서도 拘束力을 가진다. 仲裁人은 職務遂行 中 알게 된 事項에 대해서는 秘密을 維持하여야 할 義務를 負擔한다.

2. 仲裁人의 忌避

仲裁人은 法官과 마찬가지로 當事者間的 紛爭을 公平하고 適正하게 解決하여야 하는 責務를 지니고 있는 한편, 調停과는 달리 當事者를 拘束하는 仲裁判定을 내려야 하므로 仲裁의 當事者와 仲裁人 間的 信賴가 필수적인 前提條件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仲裁人이 仲裁合意 또는 法에서 정한 資格要件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公正성과 獨立性에 관하여 疑心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그 仲裁人의 地位를 박탈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仲裁制度의 經濟성과 效率性 그리고 信賴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우리 仲裁法 第13條 第2項은, 仲裁人에 대한 忌避事由로서, ① 仲裁人の 公正性이나 獨立性에 疑心을 야기할 수 있는 事情이 存在하는 경우와 ② 仲裁人이 當事者들이 合意한 資格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當事者가 이러한 忌避事由를 알고도 仲裁人을 選定하였다면 이를 理由로 忌避한다는 것은 禁反言의 原則에 反하므로, 選定 後에 알게 된 事由에 限하여 忌避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仲裁人에 대한 忌避節次는 當事者間의 合意로 定함이 原則이나, 이러한 合意가 없다면 仲裁判定部가 構成된 날 또는 忌避事由를 안 날부터 15日內에 仲裁判定部에 書面으로 忌避申請을 하여야 한다. 忌避申請을 받은 仲裁人이 辭任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忌避申請에 同意하면 해당 仲裁人은 仲裁判定部로부터 排除되나, 그렇지 아니하면 仲裁判定部는 그 忌避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仲裁判定部가 忌避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을 하면 忌避申請을 한 당사자는 그 結果의 通知를 받은 날부터 30日內에 管轄法院에 忌避를 申請할 수 있으나,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不服할 수 없다(仲裁法 第14條).

仲裁人에 대한 忌避申請은 종종 仲裁節次를 遲延시키기 위한 策略으로 利用되므로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仲裁判定部로 하여금 忌避申請이 法院에 係屬中인 경우에도 仲裁節次를 進行하거나 仲裁判定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3. 仲裁人の 研修教育

a) 仲裁의 成敗는 仲裁人の 學識과 德望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만, 仲裁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建設, 知的財産, IT, 國際去來, 法律 등 각 분야의 專門家가 仲裁人으로의 役割이 중요하다. 단순히 學識과 德望을 가진 것만으로는 不足하며 專門的인 仲裁技法 등 仲裁에 관한 보다 專門化된 教育을 받은 자가 仲裁人으로서 活動하여야만 仲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學識과 德望을 갖춘 社會指導層人士가 仲裁人이 되는 現在의 限界를 벗어나 專門的인 教育과 能力을 갖춘 사람이 仲裁人으로 活動할 수 있어야 한다.¹²⁾ 현재 仲裁

12) 獨逸과 오스트리아에서는 調停人에 대하여도 法定時間의 教育을 필수로 하고 있다. vgl. Haft.F./K.v. Schlieffen. Handbuch der Mediation. München:Beck 2002. § 15.

人은 해당분야의 專門的 知識과 經驗을 가진 企業人, 公務員, 法曹人, 學者 中에서 選任되고 있다.

仲裁人에 대한 研修教育은 仲裁에 대한 信賴性 確保에 필수적인 것이다. 仲裁의 質은 仲裁節次 進行에 責任이 있는 仲裁人의 質에 左右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仲裁人은 단순한 協商, 對話技法 外에도 仲裁에 따른 法的 理解 등 仲裁에 必要한 教育課程을 體系的으로 履修한 資格者가 많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現在 仲裁人으로 活動하고 있는 경우에도 一定時間의 研修教育을 통해 活動할 수 있는 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仲裁에 관한 一般大學教育은 專門的인 教育이라기 보다는 貿易學의 一般學科 水準에서 教育하고 있고 法學教育에서는 選擇課程에서 教育하고 있는 실정이다. 大學院課程에서 一部 大學院에서 ADR 또는 仲裁, 協商論을 教育하고 있다.

大韓商事仲裁院에서는 2007년부터 仲裁CEO아카데미를 開設하여 仲裁人 養成教育을 成功的으로 실시하고 있다.

b) 研修教育內容은 理論部門에서는 仲裁史, 基本知識과 理想的인 仲裁節次的 審理와 方法, 紛爭狀況에 따른 對話方法和 紛爭의 分析, 仲裁人의 地位, 事例分析 등 仲裁의 法律問題 등을 教育한다. 實務部門에서는 仲裁技法과 模擬仲裁를 통해 同僚들과 함께 實務指導에 參與하는 것으로 研修한다.

N. 맺으면서

仲裁制度를 效率的인 紛爭解決方法의 하나로 定着시켜 한편으로는 國家的·社會的 訴訟經濟를 圖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際去來에 있어서 企業의 紛爭解決能力을 提高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仲裁節次에서는 訴訟節次와 달리 私的自治의 原則이 적용되므로 節次的 運用에 있어서도 訴訟節次에서와는 달리 柔軟性和 多樣性이 있는 仲裁技法의 적용이 필요되며 仲裁를 위한 장소 서비스와 便利性 등 분명히 달라지는 새로운 試圖가 要望된다. 이와 함께 仲裁制度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仲裁人의 仲裁에 대한 철저한 教育과 責任意識이 改善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IT通信產業의 發展에 따라 온라인(online)상에서의 仲裁도 活性化되리라 본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正確性, 公正性 및 信賴性의 確保가 무엇보다 重要한 課題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뉴욕協約(New York Convention 1958)의 加入國이며, 國際的인 UNCITRAL의 모델仲裁法을 채택하여 仲裁法을 改正·施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技術產業뿐만 아니라 政治經濟的으로 이미 全球時代의 中心으로 발전하고 있다. 今年 11月의 G20會議의 主權國으로서의 이미지는 濟州道를 새로운 海事·貿易去來의 國際仲裁센터(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특히 國際法律家의 養成을 目的으로하고 있는 法學專門大學院(LS)이 설립되어 훌륭한 人才를 養成하고 있어 濟州道가 香港, 싱가포르 仲裁센터와 함께 觀光 交通 등 좋은 輿件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國際法律서비스의 中心地로 크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陸榮垓, 商事仲裁法論(重版), 서울:博英社 2001.
- 石川 明 外, 比較 裁判外紛爭解決制度,東京:慶應大學出版會 1997.
- 宋相現, “訴訟에 갈음하는 紛爭解決方案의 理念과 展望”, 民事判例研究 XIV, 서울:博英社, 1993.
- 張文哲, 現代중재법의 理解, 서울:世昌出版社 2000.
- 仲裁(季刊), 서울:大韓商事仲裁院 2006, 2009.
- Blankenburg, E./Gottwald, W./Stempel, D., Alternativen in der Ziviljustiz, Köln: Bundesanzeiger Verlag 1982.
- Haft,F./K.v. Schlieffen, Handbuch der Mediation, München: Beck 2002.
- Kane,Mary K.,Civilprocedure (West, 3rd.ed.1991).
- Kojima, Takeshi, Civil Procedure and ADR in Japan, Tokyo: Cho Univ. Press 2004.

[Abstract]

The Present Conditions of Korea Arbitration, Arbitrator Position

Yang, Byung-Hoe

A Professor Emeritus, KonKuk Univ.

In general, Disputes on private law are solved by legal procedure of courts. But, because all the complicated, various cases are not solved by courts, modern states have researched, examined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by the method outside lawsuit.

There is a resemblance between ADR and lawsuit in that the parties are given the opportunity of presenting assertion and evidence in the presence of other persons.

Nevertheless, lawsuit is that judge pass a judgement a case according to law, the other side, ADR is that specialists of various fields pass a judgement from a long terms viewpoint for the profits of the parties. It is an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m.

Arbitration is the indepent system of dispute solution in which arbitrator finally settle the dispute of the parties. Essentially, it is private judgement. That is difference from conciliation and mediation which settle the dispute by mutual concession. In the following, I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of Korea arbitration, arbitrator position, and present the way of activating the system of arbitration.

Key words : Arbitration, ADR, Dispute Solution, Lawsuit